

#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(유용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8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1일

발 의 자 : 유용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기대, 김기덕, 김소영,  
김태호, 봉양순, 송명화,  
안광석, 이광성, 이종환,  
황규복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서울시 출자·출연 기관의 결산 완료시점이 기존 회계연도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세종문화회관도 이를 적용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세종문화회관의 결산 완료시점을 2월 말로 하고자 함(안 제15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 
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3월 말” 을 “2월 말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15조(결산서의 제출)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<u>3월 말까지</u>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5조(결산서의 제출) ----- ----- ----- ---- <u>2월 말까지</u> ----- -----.</p>